

보도시점 2024. 5. 21.(화) 10시 배포 2024. 5. 21.(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분야 행정규제 개선 추진
- 중소기업인의 부담 경감, 생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거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종훈	(044-200-6847)
		담당자	사무관	최혜경	(044-200-6846)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 (현행)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을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한정
- (개선)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

안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현행) 급격한 지가상승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조정산식에 따라 부담완화
- (개선) 점용료·사용료 조정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산식 개편

안 제3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6조제1항)

- (현행) 공인노무사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현장 연수교육을 받아야 직무개시 가능
- (개선)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안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별표 2)

- (현행)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매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부과
- (개선)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 인하

안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2조, 별표 1)

가.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제32조)

- (현행)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5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관광사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후 4년 내 착공, 착공 후 7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토록 기한 2년씩 연장

나.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별표 1 제1호)

- (현행)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을 1천500만원으로 규제
- (개선)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본금을 750만원으로 50% 감액

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별표1 제3호)

-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을 위한 객실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 (개선)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객실기준을 20실 이상으로 완화

안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2)

- (현행)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미달로 행정 처분 대상인 경우,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처분 예외
- (개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기술능력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도 처분 예외 허용

안 제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6항)

- (현행)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기한(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기간 동안 연체금 부과
- (개선) 2024. 6. 1.부터 2026. 5. 31.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120일 이내로 2배 연장

안 제8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4조제3항)**

- (현행)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 일반군무원은 20세 이상, 그 밖의 일반군무원은 직급에 따라 18세 또는 20세 이상으로 제한
- (개선) 유형이나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완화

안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1항)**

- (현행)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이수(검정시험) 시 ‘1년 이상 보험 설계사 등’의 경력요건 필요
- (개선) 교육 이수 시 필요한 요건에서 ‘1년 이상 보험설계사 등’ 경력요건 삭제

안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

- (현행)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 (개선) 2024. 5. 31.부터 20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확대

안 제1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 (현행)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대상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제한
- (개선)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대상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경력 제한 완화

안 제12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7)**

-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은 저수면적 2백만㎡ 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2천만㎥ 이상의 댐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이 관리 중인 37개 댐 중 28개 댐만 현재 지원사업 대상

- (개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댐으로 확대, 신규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 댐별 지원금 산정기준 신설

안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조제1항)

- (현행)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공사 시 공사유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분납은 불가
 - * 경미 파손, 단순 보수 등 총액 20만원 미만은 부담금 면제
- (개선) 2024. 9. 1.부터 2026. 8. 31.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 분납 가능

안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4조제6항)

- (현행)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위탁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위탁근거 미흡
- (개선) 현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LX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법제화

안 제15조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

- (현행) 국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도서관 포함)은 사서 4명 이상,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을 갖추어야 등록 가능
- (개선) 2024. 6. 1.부터 2026. 5. 31.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 작은도서관은 2개 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두면 등록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안 제16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 (현행)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7일
- (개선)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30일로 연장

안 제17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 (현행)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 조정 예고 시 문화유산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의 미제공으로 국민이 규제지역을 알기 어려움
- (개선)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 조정 예고 시 문화유산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함께 고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2제1항)**

- (현행)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
- (개선)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편성의무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으로 완화

안 제19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 (현행)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편의시설(강당·회의실, 도서실, 상담실, 방송시설, 보건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
- (개선) 편의시설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2)**

- (현행) 가자미류 4종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20cm로 적용
- (개선) 가자미류 4종의 금지체장을 2024. 6. 1.부터 2024. 12. 31.까지 17cm로 유예

안 제2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 (현행)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
- (개선)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확대

안 제22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8조제2항)**

-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4회 분할납부만 가능
- (개선)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4회 또는 6회 중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화장실 내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부과
- (개선) 2024. 6. 1.부터 2025. 5. 31.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한시적 유예

안 제2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
-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2024. 11. 1.부터 2026. 10. 31. 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

안 제25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현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는 최소 6명 이상 기술인력이 상근해야 등록 가능(공학2, 경영1, 정보통신1, 컨설팅2)
- (개선) 기술인력 요건을 4명 이상(분야별 1명)으로 완화하고 경영, 정보통신 분야는 비상근 인력 확보 시 등록 가능토록 완화

안 제26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 (현행)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발행
- (개선)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본인확인을 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한도 확대

안 제27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제6항)

-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 (개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 등에게 1회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

안 제2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제3항)

- (현행)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
- (개선) 직전 사업연도 말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고려,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
 - * 부채비율 100% 미만(자본금의 50%), 부채비율 100% 이상 200% 미만(자본금의 25%), 부채비율 200% 이상(자본금의 10%)

안 제29조 향로표지법 시행령(별표 2)

- (현행) 향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확보 3억원 이상
- (개선) 자본금 확보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완화

안 제30조 향만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2항)

- (현행)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제조업,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총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에 1종 향만배후단지 우선 입주를 허용

- (개선) 우선입주 자격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40% 이상인 제조업,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총매출액 비중이 40% 이상인 국내 복귀기업으로 확대

안 제31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1)

- (현행) 인천·여수·부산·포항의 교통안전특정해역은 육지·연안에서 이격하여 설정된 반면, 울산은 거대선이 통항할 수 없는 해안가를 포함하여 설정
- (개선) 해상교통량이 적고,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이 통항하지 않은 육지와 인접한 해안가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에서 제외

안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6)

- (현행) 화물운송사업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없음
- (개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축소